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별표 3>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별표 4> 수련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 대표 인정학회

분과	인정학회	관련학회
소화기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순환기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대한핵의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호흡기	대한내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수면의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분과	인정학회	관련학회
내분비-대사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신장	대한내과학회 대한신장학회 (*) 대한이식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전해질학회, 내과계신이식연구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혈액종양	대한내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 (*) 대한종양내과학회 (*)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지혈혈전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 (해외) 학술대회
감염	대한내과학회 대한감염학회 (*)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 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기생충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요로감염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면역저하환자감염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알레르기	대한내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직업성폐질환학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관절류마티스	대한내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	인정학회에서 지원하는 국제(해외) 학술대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분과	학술지
9개 분과 동일	SCI, SCI(E)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분과	전임의 정원
소화기	교육지도자 수 - 0
순환기	교육지도자 수 - 0
호흡기	교육지도자 수 - 0
내분비 - 대사	교육지도자 수 - 0
신장	교육지도자 수 - 0

분과	전임의 정원
혈액종양	교육지도자 수 - 0
감염	교육지도자 수 + 1
알레르기	교육지도자 수 + 1
관절류마티스	교육지도자 수 - 0

별표 4 수련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1. 공통기준

수련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시험 응시자격 심사 전 2년간 내과학회 주관 연수교육 2평점 이상, 각 분과별 대표 인정학회 지정 프로그램 8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불인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로서 대한내과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최소 한 1회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발표 (2009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부터 적용)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총 1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규정집에 명시**(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된 학술지(원저, 증례, 종설)에 투고 및 게재
학술대회	수련개시일로부터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1회 포함하여 인정학회 학술대회 4회 이상 참석

2. 분과별 기준

분과	수련내용	기준
소화기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위장관질환 50명 이상, 간, 담도, 췌장 및 기타 소화기질환 50명 이상)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30건 이상
	교육내용	1) 소화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소화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능력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5) 인성교육

분과	수련내용	기준
순환기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심혈관계 중환자 및 응급환자 관리 50명 이상) 2) 외래 환자 200명 이상 3) 타과 진료 상담 50건 이상
	교육내용	1) 순환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순환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진찰수기 3) 150예 이상의 비관혈적 검사(운동부하검사, 24시간심전도감시검사, 심초음파도, 기립경사검사, 심장핵의학검사)와 100예 이상의 관혈적 검사(심도자술, 심혈관조영술,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실시 및 결과 판독능력 4) 심낭천자술, 경피적 경혈관 관동맥 성형술, 심박동기삽입술 등의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추적관찰능력 5) 인성교육
호흡기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외래환자 3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30건 이상
	교육내용	1) 호흡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호흡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능력 (1) 폐기능검사 판독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1) 기관지 내시경 (생검, 경기관지 폐생검, 기관지폐포세척술) (2) 인공호흡기 조작 (3) 흉막천자 (4) 중환자집중감시장치 조작 (5) 기관내 삽관술 5) 인성교육

분과	수련내용	기준
내분비-대사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25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50건 이상
	교육내용	1) 내분비-대사 질환의 병태생리의 이해,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초 및 임상적 지식 2) 내분비-대사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각종 임상기술(병력청취, 진찰, 각종 진단수기 등) 3) 내분비-대사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의 적절한 선택 및 수행과 정확한 해석능력 4) 내분비-대사 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치료 방법의 결정과 실행능력 5) 내분비-대사 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의 계획수립 및 수행능력 6) 바람직한 임상의로서의 적절한 윤리적 태도 및 행동, 환자, 환자가족 및 동료의사와의 의사소통 능력 7)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교육의 계획수립 및 수행능력
신장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12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신장내과분과전문의로서 신장 질환의 진료와 연구 및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신장내과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단 (1) 신기능검사, (2) 요검사, (3) 일반화학 및 혈청면역학적 검사, (4) 요로계 영상의학 검사, (5) 요로계 핵의학적 검사, (6) 신장병리검사 4) 전문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1) 혈액투석 (2) 복막투석 (3) 신이식(경우에 따라 신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파견 근무도 인정) (4) 신생검 5) 윤리와 인성교육 시험 응시 전 2년 이내에 대한신장학회 윤리교육을 1번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인정시험원서 접수 시 이수증을 제출하여 한다.

분과	수련내용	기준
혈액종양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혈액-종양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전문적인 문진 및 진찰 3) 검사실 성적 및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능력 4) 전문특수진료수기의 습득 및 판독능력 5) 방사선종양학과 1개월 이상 파견 또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포함한 정기적 다학제 집담회 6) 1개월 이상의 조혈모 세포이식 교육을 이수 7) 윤리교육
감염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 환자 진료 70명 이상 2) 타과와의 진료 상담 100건 이상
	교육내용	1) 감염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1) 감염질환의 진단적 접근 (2) 항생제의 사용원칙 및 경험적 항균 요법 (3) 면역저하 환자의 진단 및 치료 (4) 병원감염의 관리 (5) 패혈증의 치료 (6) 불명열 환자의 진단적 접근 2) 미생물학적 검사 수기 3) 임상 또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4) 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
알레르기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 환자 진료 20명 이상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15건 이상
	교육내용	1) 알레르기 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1) 천식 및 폐쇄성 기도질환의 진단적 접근, 관리 및 치료 (2)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관리 및 치료 (3) 만성기침 환자의 진단 및 치료 (4) 두드러기 환자의 관리 및 치료 (5)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관리 및 치료 (6) 약물 알레르기 환자의 진단 및 치료 (7) 음식물 알레르기 및 위장관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과	수련내용	기준
알레르기	교육내용	(8) 곤충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진단, 관리 및 치료 (9) 호산구 증가증환자의 진단 및 치료 (10) 과민성 폐질환 2) 다음 전문 검사 및 치료법의 정도관리 및 결과 판독능력 (1) 알레르기 피부단자 시험 (2) 알레르기 피내 반응 시험 (3) 혈청 총 IgE 및 특이 IgE 검사 (4) Spirometry 및 기도가역성 검사 (5) 비특이적 천식유발검사 (6) 특이 항원유발검사 (7) 유도객담 검사 (8) 면역치료법 및 탈감작요법 (9) 피부 첩포시험 (10) 비후두 내시경검사 (11) 코통기도 검사 필수사항: (1)~(8), 권장사항: (9)~(11) 3) 임상 또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4) 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 5) 인성교육
관절류마티스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류마티스관절염 및 그 유사질환 25명 이상 전신홍반루푸스 및 그 유사질환 20명 이상 기타 류마티스 질환 5명 이상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50건 이상

분과	수련내용	기준
관절 류마티스	교육내용	1) 관절류마티스내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1) 각종 류마티스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후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및 가성통풍, 골다공증, 감염관절염, 척추강협착증, 전신경화증,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관절염, 반응관절염, 견통, 요통, 운동손상, 악관절증후군, 다발/피부 근육염, 종양관절증, 건선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2) 실험실적 검사 항핵항체, 류마티스 인자, 각종 자가항체, 혈중 면역복합체, HLA, 급성기 반응물질, 혈중 보체, 윤활액 검사, 결정검사 (3) 근육골격계 질환의 영상진단 단순 X선 검사,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 동위원소 신티그래피, 자기공명영상, 관절조영술, 근육골격계초음파 (4) 병리 조직 검사 피부, 관절 활막, 근육 및 신경, 콩팥, 폐장, 기타 (5) 약물치료 비스테로이드항염제, 항류마티스제제, 스테로이드, 생물학적 제제, 면역억제제, 뇨산저하제 (6) 재활적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부목 및 보조기, 영양, 운동, 신발 (7) 의학윤리 치료의 윤리, 법적 문제 2) 관절류마티스내과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신체검사 3) 전문검사 결과의 판독능력 4) 전문특수 진료수기의 습득과 결과 판독능력 (관절경 검사, 관절천자 및 관절강내/관절주위 조직내약물주입, 활막, 근육 및 피부조직검사 등) 5) 인성교육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분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소화기	1) 교육지도자 수 : 2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 필수사항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복부초음파촬영,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권장사항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복강경검사, 방사성동위원소검사, 치료내시경, 소화관생리검사, 내시경 초음파검사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일반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순환기	1) 교육지도자 수 : 2명 이상 2) 병상 수 : 심혈관계 중환자관리실을 갖춘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 비관혈적 검사 -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도 기립경사검사 관혈적 검사 - 심도자검사 심혈관조영검사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개심술 및 관동맥 우회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호흡기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기관지내시경, 폐기능검사기기, 인공호흡기, 동맥혈가스분석기, 각종 생검기구류, 중환자감시기구(polysomnograph,

분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운동폐기능검사기, 흉강경을 권장한다)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필수 :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권장 :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내분비-대사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1) 동위원소 시설 : 호르몬의 측정, 내분비기관의 영상진단, 내분비-대사질환의 치료 (2) 영상검사시설 :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또는 핵자기공명영상,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에 의한 골밀도 측정기 (3) 병리검사실 : 갑상선 세침검사결과 판독 4) 당뇨병 교육을 위한 교재 및 시설 5)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안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신장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1) 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 시설 (2)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한 제반시설(LM, IF, EM포함) (3) 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동위원소 시설 (4) 신기능 검사를 위한 시설 4)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 :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혈액종양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감염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분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3) 검사시설 : 미생물학적 검사 및 혈청 검사에 필요한 시설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진단검사의학과내 세균부와 혈청학부
알레르기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 시설 (1) 알레르기 피부시험실 (2) 폐기능 및 천식유발검사실 (3) 혈청 총 IgE 및 특이 IgE 측정검사실 (4) 내시경검사실 (5) 유도객담 검사실 (1)~(3): 필수, (4)~(5): 권장
관절 류마티스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상 수 :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필수) 일반 임상병리 검사시설, 일반 방사선 검사시설 (권장) 형광현미경, 편광현미경, 해부조직병리시설, 전신골스캔, 초음파촬영,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관절경검사시설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필수)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권장) 재활의학과,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